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바로건설기술(김광만, 서현주)
 ②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최홍남)
 ③ (주)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 02-413-6503 ② 02-2047-3831 ③ 02-3011-2066

2. 명칭 : 높이조절이 가능한 1.5m이상 기초(Mat)의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어)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기초의 상부철근 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 있어 버림콘크리트의 요철에도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상부 철근의 하중을 균등히 바체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 설치시 용접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를 갖추어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철근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어)

어)이다. 핵심요소기술로는 첫째, 사각기둥형상의 코너에 수직 앵글을 배치하고 이를 수평재와 사재로 서로 연결하여 작은 부재의 조합으로 입체트러스를 구성하여 좌굴성을 향상시키며, 둘째,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배치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무용접 시공을 위해 상기 너트 위에 받침부를 두고 받침부에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수평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받침용 채널을 용접없이 ‘ㄱ’형강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와 바체어를 서로 연결하는 수평연결재와 바체어의 수평하중저항을 위해 경사로 거치하는 가새는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용접 없이 고정 및 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바체어의 중간높이 부분에 발판을 조립 거치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상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이다

<범위>

1.5m 이상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서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설치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하며, 너트 위의 받침부에는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너트 위에서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상부철근 받침용 채널 또는 H형강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를 수평연결하는 수평연결재와 수평하중을 저항하도록 바체어에 경사로 설치하는 가새를 전용클립으로 고정함으로써 무용접 공법을 실현하며, 바체어의 중간높이에 발판을 조립거치하고 서로 연결하여 상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구성된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6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추가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I.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